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14
----------	------

제출년월일 : 2017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2014년 9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센터가 서울시 산하기관으로서 원활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 나.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조례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출연금 지원이 제한됨에 따라 센터에 출연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함 (안 제4조의4)
- 나. 센터에 대한 성과계약 근거를 마련함 (안 제4조의5)
- 다. 센터에 대한 경영평가 등의 시행근거를 마련함 (안 제4조의6)
- 라.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근거를 마련함 (안 제4조의7)
- 마.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의8)
- 바. 센터에 대한 출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 (안 제13조제1항)
- 사. 결산보고서 등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안 제13조의2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사항 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 제외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국·국 협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17.08.10. ~ 08.30.) 결과: 제출의견 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 붙임

※ 작성자 : 자치행정과 주민지원팀 백명철 (☎ 2133 - 5830)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부터 제4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센터에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센터의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5(성과계약) ①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내(회계연도 중 센터장이 새로 임명된 경우 임명일로부터 1개월 내)에 센터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센터장의 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장의 당해 연도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1. 정부·서울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

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제4조의6(업무의 평가) ①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경영실적 평가
3. 시민만족도 조사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의7(평가의 활용) ① 시장은 제4조의6에 따른 평가 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6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센터에 대한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의6에 의한 평가계획 및 결과와 제2항에 의한 성과급 지급률 등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8(시정명령) ① 시장은 제4조의6에 따른 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센터에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센터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때에는 센터에 미리 점검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 센터에 보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의2제3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지원”을 “출연”으로 한다.

제13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결산보고서 등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체결된 성과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4조의4(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센터에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센터의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4조의5(성과계약) ①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내(회계연도 중 센터장이 새로 임명된 경우 임명일로부터 1개월 내)에 센터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p> <p>②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센터장의 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장의 당해 연도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센터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p>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1. 정부·서울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신 설>

제4조의6(업무의 평가) ①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경영실적 평가
3. 시민만족도 조사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7(평가의 활용) ① 시장은 제4조의6에 따른 평가 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6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센터에 대한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의6에 의한 평가 계획 및 결과와 제2항에 의한 성

<신 설>

과급 지급률 등을 시의회 소관 상
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8(시정명령) ① 시장은 제4
조의6에 따른 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센
터에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센터
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의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때에는 센터에 미리 점검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에 저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확인·점검 결과 이행
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 센터에 보
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의2(자원봉사 활동 등의 지
원)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경비 지원을 받는 자
원봉사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

제10조의2(자원봉사 활동 등의 지
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표의 명의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아니 된다.

제13조(센터지원) ①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센터지원) ① -----
----- 범위 안-----
----- 출연-----.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 ③ (생략)

제13조의2(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시장은 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결산보고서 등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6은 경영실적 평가, 시민만족도 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평가 시, 평가 수수료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임
 - 연 비용 추계 : 총 25,200천원
 - 경영평가 : 15,000천원, 시민만족도 조사 : 13,200천원
 - 평가주기 : 연 1회
 - ※ 평가 전문업체 견적 등을 검토하여 추계함.

4. 작성자

- 자치행정과 백명철(2133-5830)